

December 10,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4

[특집] 2020. 12. 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동향

제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이슈가 되었던 기업규제 3법·노동관계법 등 기업 및 사회 주요 법안이 12월 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됨에 따라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 (입법GA팀)에서는 “정책 입법 동향 레터”의 특집편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총 115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통과된 법안 중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3% rule 적용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 적용 - 감사 등 선임 전자투표시 주총 결의요건 변경 등 ※ 원안 대비 3%를 완화(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방식 아닌 개별 의결권 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정무위원장	- 금융복합기업집단 개념 신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등 ※ 기존 법안명(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서 변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 폐지 및 소방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정부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오남용 방지 장치 포함) -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3개월로 확대(오남용 방지 장치 포함) 등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비산배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 결함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함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도입(과태료 폐지) • 일정 공매도 거래자 유상증자 참여제한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보장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개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김용민 의원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정보 제공 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추가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